

제 817차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

<첨 부>

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

- 건 명 : 남산1호터널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
- 심 사 일 : 2013. 8. 19.
- 사업개요
 - 용역비 : 939,040천원
 -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8개월
 - 사업규모
 - 남산1호터널, 육천1복개구조물, 녹번천복개구조물
 - 발주부서 :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
- 심사결과 : 적 정 (조건부)

심사항목	심 사 내 용
1. 용역의 필요성 (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) □ 대 상 ■ 미대상	○ 대상시설물은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 7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관리되는 1종시설물로서 안전성과 기능성 등을 보전하기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시행의 필요성 인정됨 알림 : 주요 공종이 자체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추진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○ 용역비 조정 939,040천원 → 819,900천원 (감 119,140천원, 대비 12.7%) · 보조인부 조정 : 281인 → 69인 적용 (터널 : 점검일수×2인, 복개 : 점검일수×1인) · 주기적 반복점검 : 0.95 조정비 적용 · 물가상승율 : 10% → 2.2% 적용 · 보고서인쇄비 : 4,473천원 → 994천원(감 3,479천원) · 구조해석 : 7,024천원 → 감 0 원 · 상태평가 및 안전성에 대한 구조해석은 기본과업 (단, 구조의 변경 등 재해석이 필요시에는 대가지급) · 자문비조정(1인) 150천원 적용 · 차량운행비 제외
3. 조건부여 이행 확인사항 - 용역성과품공개,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절차이행 등	○ 기술용역 추진시 사전확인 사항(첨부)을 철저히 준수바람
4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	○ 대가조정시 적정대가 적용, 용역비 집행 및 정산철저
5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지연, 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	○ 용역발주 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 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 할 것

확인 항목	세 부 내 용
용역시스템	1.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(첨부) 등록 ○ 용역발주 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를 기술용역관리 시스템에 추가 등록 ※ 기술심사담당관-600호(13.1.14) : 용역관리 시스템 개선
입찰전	2.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- 심의절차 이행 -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○ 발주부서 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시행전에 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 - 단, 서울시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과 모순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심사 담당관과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 대체 ※ 행정2부시장 방침 제97호(13.3.25) : 사업수행능력평가 개정시행
심사 및 심의권 확인	3. 유관부서 의견수렴 -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 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 ○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요청 전 유관(관리)부서 및 관련(유관)부서 의견 조화 등 의견수렴 -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부서, 공사부서, 유지관리부서 등 TF팀 구성운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 -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※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3호(13.5.22) : 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 작성
타당성 조사용역	4. 타당성조사 용역시 과업내용서 반영사항 ○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범위 검토 -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시 재원조달방안 및 타당성 재검증 검토 시행
용역준공시	5.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이행절차 -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- 정보소통광장 등록 절차이행 ○ 발주부서 는 '13.7.1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 성과품에 대해 정보소통광장 (http://www.gov20.seoul.go.kr) 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- 용역보고서 : PDF파일 변환하여 정보소통광장에 등록(준공시) - 전체성과품 : 인쇄본 3부 및 CD 1부 서울도서관 제출(준공시) · 서울도서관 디지털성과품 표준포맷 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 ※ 시장방침 제135호(13.5.24) :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
설계시	6.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건설기술 용역 추진시 - 지장을 확인절차 -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 최소화 ○ 공사구간내 또는 인접구간의 차폐시설물도는 우리시 통합공간정보서비스 (http://98.33.0.64/gis/index)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 - 아울러 지반조사, 현황 측량차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
내 진	7.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설계 반영 여부 ○ 모든 공공건축물(규모관계 없이) 및 지적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허현수문, 교량·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※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절차(구조기술사) 서울시 해당시설 내진설계기준 제정현황